해커스패스 공무원 세법 기본서 (2016 개정판) 1쇄 추록

최종 수정일 : 2016년 1월 8일

아래 추록은 2016년 법령과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입니다. 기본서 학습 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세법 1권

<table>
<tr><th>위치</th><th>현재 내용</th><th>수정 사항</th><th>비고</th></tr>
<tr><td>19p</td><td>(6)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세법 중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물납제도가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납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td><td>(6) 조세는 금전급부이다
조세는 금전으로 납부되며, 물납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현행 세법 중 ~~「소득세법」·「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물납제도가 있지만, 이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금전납부를 대신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td><td>2016.01.08</td></tr>
<tr><td>19p 보조단</td><td>세목별 물납가능 재산
1. 소득세(양도소득세 한정) : 공공용지보상채권(부동산불가능)
2. 법인세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
3. 종합부동산세 : 국내소재 부동산
4.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 단,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td><td>세목별 물납가능 재산
~~1. 소득세(양도소득세 한정) : 공공용지보상채권(부동산불가능)~~
~~2. 법인세 :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발행한 보상채권~~
~~3. 종합부동산세 : 국내소재 부동산~~
~~4.~~ 상속세 및 증여세 : 부동산과 유가증권(비상장주식 제외, 단, 상속의 경우로서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허용)</td><td>2016.01.08</td></tr>
<tr><td>39p</td><td><table><tr><th>구분</th><th>개별세법이 우선하는 규정</th></tr><tr><td>서류송달 중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td><td>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음)</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개별세법이 우선하는 규정</th></tr><tr><td>서류송달 중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송달</td><td>~~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통지(상속인이나 수유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중 1명에게만 통지할 수 있음)~~</td></tr></table></td><td>2016.01.08</td></tr>
<tr><td>61p</td><td>4. 전자신고
(1)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국세정보통신망에 입력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td><td>4. 전자신고
(1) 신고서 등을 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해당 신고서 등이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국세기본법」 제5조의2 제2항).</td><td>2016.01.08</td></tr>
<tr><td>157p</td><td>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사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td><td>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의 사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td><td>2016.01.08</td></tr>
</table>

	생하는 때에는 위의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생하는 때에는 위의 청구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159p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2016.01.08
192p	(3) 국세청의 세무사찰 결과에 따른 처분	(3)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2016.01.08
193p	1. 청구기관 (1) 이의신청서의 제출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 1, 2항). ①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②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③ 세무서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1. 청구기관 (1) 이의신청서의 제출 ① 이의신청은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세무서장을 거쳐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하며, 세무서장에게 한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한 것으로 본다.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이의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해당 지방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 1, 2항). ㉠ 지방국세청장의 조사에 따라 과세처분을 한 경우 ㉡ 같은 지방국세청장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로서 조사한 세무서장과 과세한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 ㉢ 세무서장에게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경우 **② 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 또는 신청서 또는 의견서를 받은 지방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에 대한 의견서를 이의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견서에는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7항).**	2016.01.08
193p	(2) 심사청구서의 제출 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3항).	(2) 심사청구서의 제출 ① 심사청구는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해당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심사청구의 제출을 받은 세무서장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청구서에 **처분의 근거·이유, 처분의 이유가 된 사실 등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66조 제3항). **② 의견서가 제출되면 국세청장은 지체 없이 해당 의견서를 심사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6.01.08
207p	-	**⑤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016.01.08

해커스 공무원 Pass.com

208p	-	**⑧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2016.01.08
211p	7.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1)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도 있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특정 항목의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다른 과세기간으로 연결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7. 세무조사 범위 확대의 제한 세무공무원은 다음 중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 세무공무원은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범위를 납세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2항). (1)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증거 자료가 발견되어** 다른 과세기간·세목 또는 항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 조사 과정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 (3) 명백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는 조사대상 과세기간의 특정 항목이 다른 과세기간에도 있어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금탈루 혐의 또는 세법 적용 착오 등이 있을 것으로 합리적으로 의심되어** 그 항목에 대한 다른 과세기간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2016.01.08
232p	**2. 포상금산정**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2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2. 포상금산정**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게는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에 다음의 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 **30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 제1항).	2016.01.08
234p	**1. 명단공개 대상** (1) 명단공개 대상 국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① 고액 상습체납자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	**1. 명단공개 대상** (1) 명단공개 대상 국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5 제1항). ① 고액 상습체납자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체납액 등	2016.01.08
234p 보조단	-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 지났는지 여부** **국세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는지 여부는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2016.01.08
235p	③ 조세포탈범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③ 조세포탈범 :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포탈세액 등이 연간 3억원 이상인 자의** 인적사항, 포탈세액 등	2016.01.08
235p	2. 명단공개 방법 (1)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①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	2. 명단공개 방법 (1) 명단공개 대상 불성실기부금수령단체 ①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	2016.01.08

해커스 공무원 Pass.com

	한 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한 세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보관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③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거짓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하였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74p 보조단	-	**압류 시 제3자의 권리보호**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의 선택 시 체납처분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전세권·질권·저당권 등 체납자의 재산과 관련하여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국세징수법」 제33조의3).**	2016.01.08
277p	3. 질문·검사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7조).	3. 질문·검사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하면서 압류할 재산의 소재 또는 수량을 알고자 할 때에는 체납자, 체납자와 거래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의 재산을 점유하는 자, 체납자와 채권·채무관계가 있는 자, 체납자가 주주 또는 사원인 법인, 체납자인 법인의 주주 또는 사원**,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27조).	2016.01.08
283p	3. 사해행위 취소의 절차 세무공무원은 사해행위를 직권으로 취소할 수 없으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사해행위 취소의 절차 **세무공무원은 체납처분을 집행할 때 납세자가 국세의 징수를 피하기 위하여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신탁법」에 따른 사해신탁을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민법」를 준용하여 사해행위(詐害行爲)의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30조).**	2016.01.08
296p	(2) 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 ② 입찰보증금은 입찰가격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은 매수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항). ③ 입찰보증금 또는 계약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입찰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	(2) 공매보증금 ① 세무서장은 압류재산을 공매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매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1항). ② **공매보증금은 매각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2항). ③ **공매보증금**은 국공채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3항). ④ 낙찰자 또는 경락자(競落者)가 매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세무서장은 **공매보증금**을 체납처분비,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가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	2016.01.08

<table>
<tr><td></td><td>산금의 순으로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체납자에게 지급한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td><td>게 지급한다(「국세징수법」 제65조 제4항).</td><td></td></tr>
<tr><td>314p
보조단</td><td>-</td><td>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외동포가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입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 비사업 목적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입국한 기간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보지 아니한다.</td><td>2016.01.08</td></tr>
<tr><td>353p</td><td>②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연간 2,0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비과세</th><th>과세</th></tr>
<tr><td rowspan="2">축산부업</td><td>비과세규모에서 발생하는 소득</td><td>전액 비과세</td><td>-</td></tr>
<tr><td>위 이외 소득금액</td><td rowspan="2">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2,000만원 이하인 소득</td><td rowspan="2">연 2,000만원 초과시 초과분 과세</td></tr>
<tr><td colspan="2">기타 농가부업 소득금액</td></tr>
</table></td><td>② 축산부업 이외의 부업 : 농가부업규모를 초과하는 사육두수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기타의 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연간 3,000만원까지 비과세하며, 연간 3,000만원을 초과시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과세한다.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비과세</th><th>과세</th></tr>
<tr><td rowspan="2">축산부업</td><td>비과세규모에서 발생하는 소득</td><td>전액 비과세</td><td>-</td></tr>
<tr><td>위 이외 소득금액</td><td rowspan="2">소득금액 합계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인 소득</td><td rowspan="2">연 3,000만원 초과시 초과분 과세</td></tr>
<tr><td colspan="2">기타 농가부업 소득금액</td></tr>
</table></td><td>2016.01.08</td></tr>
<tr><td>358p
보조단</td><td>-</td><td>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매각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소득세법」 제25조 제3항).</td><td>2016.01.08</td></tr>
<tr><td>359p
보조단</td><td>-</td><td>업무용승용차 매각 당시 장부가액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의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매각 당시 장부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td><td>2016.01.08</td></tr>
<tr><td>360p</td><td>-</td><td>(3)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① 복식부기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업무에 사용한 「개별소비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으로 정하는 비용('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중 업무용 사용금액('업무사용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과세기간에 각각 8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감가상각비 한도초</td><td>2016.01.08</td></tr>
</table>

해커스 공무원 Pass.com

		과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이월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감가상각비 ㉡ 업무용승용차별 연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③ 복식부기의무자가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 등의 방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④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한 복식부기의무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업무사용금액의 계산방법,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 이월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77p	⑨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⑨ 근로자가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벽지가 아닌 곳에서 근무하는 동일한 직급 및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의 급여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2016.01.08
391p	(20) 기타 다음의 소득 ① 영화필름, 라디오·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② 개당·점당 또는 조(2개 이상이 함께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통상 짝을 이루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당 양도가액이 6,000만원 이상인 법에 정한 서화·골동품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다만, 양도일 현재 생존해 있는 국내 원작자의 작품은 제외한다. ③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④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⑤「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⑥「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경륜·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⑦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⑧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	(20)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 (종교인소득)	2016.01.08

	하는 자산		
393p	-	(8) 종교인소득 중 다음에 해당하는 소득 ①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자금 ②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③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비변상적 성질의 지급액 ④ 종교 관련 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으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⑤ 종교 관련 종사자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택을 제공받아 얻는 이익	2016.01.08
393p 보조단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의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종교인소득을 지급받은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한다.	2016.01.08
394p 보조단	-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2016.01.08
394p 보조단	-	종교인소득을 지급하고 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2월분의 종교인소득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2월분의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2월 말일로 한다.) 또는 해당 종교 관련 종사자와의 소속관계가 종료되는 달의 종교인소득을 지급할 때 해당 과세기간의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계산한 금액을 원천징수한다.	2016.01.08
394p	(3) 과세최저한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4조). ①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 매 건마다 50,000원 이하. 다만,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②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건별로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인 때 ③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건별로 500만원 미만인 때	(3) 과세최저한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소득세법」 제84조). ① 일반적인 기타소득금액 : 매 건마다 50,000원 이하. 다만,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기타소득금액은 과세최저한을 적용하지 않고 금액에 관계없이 과세한다. ②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 건별로 승마투표권 등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슬롯머신 등을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 등 :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때	2016.01.08

해커스 공무원 Pass.com

<table>
<tr><td>396p</td><td>⑦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td><td>~~⑦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예식이나 종교의식을 집행하거나 관장하는 등 종교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그가 소속된 종교단체 등으로부터 받는 금품~~</td><td>2016.01.08</td></tr>
<tr><td>396p</td><td>-</td><td>(5) 종교인소득에 대해서는 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비과세소득 금액을 제외한다) 중 다음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table>
<tr><th>종교 관련 종사자가 받은 금액</th><th>필요경비</th></tr>
<tr><td>2천만원 이하</td><td>받은 금액의 100분의 80</td></tr>
<tr><td>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td><td>1,600만원 +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td></tr>
<tr><td>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td><td>2,600만원 +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td></tr>
<tr><td>6천만원 초과</td><td>3,200만원 + (6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td></tr>
</table></td><td>2016.01.08</td></tr>
<tr><td>426p</td><td>④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
⑤ 부양가족공제 :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 다만, 장애인은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간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이 100만원 이하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는다.</td><td>④ 배우자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및 양도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한다)이 없거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거주자의 배우자(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
⑤ 부양가족공제 : 해당 거주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의 부양가족. 다만, 장애인은 연령요건이 없으므로 20세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비과세소득·분리과세소득 제외)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을 포함한다)의 소득금액의 제한은 받는다.</td><td>2016.01.08</td></tr>
<tr><td>446p</td><td>㉢ 3단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 min[ⓐ, ⓑ]</td><td>㉢ 3단계 : 기부금 세액공제액의 계산 : min[ⓐ, ⓑ]</td><td>2016.01.08</td></tr>
</table>

해커스 공무원 Pass.com

<table>
<tr><td></td><td>ⓐ 기부금 세액공제액 = 3천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3천만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 25%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14% 세율 적용분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14% 세율 적용분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td><td>ⓐ 기부금 세액공제액 = 2천만원까지의 공제대상 기부금 × 15% +
2천만원 초과분 공제대상 기부금 × 30%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14% 세율 적용분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종합소득 산출세액 × (사업소득금액 또는 14% 세율 적용분 금융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td><td></td></tr>
<tr><td>457p</td><td>2. 연말정산대상 소득
「소득세법」상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보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td><td>2. 연말정산대상 소득
「소득세법」상 연말정산대상 소득은 다음과 같다.
(1)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td><td>2016.01.08</td></tr>
<tr><td>457p</td><td><table><tr><th>구분</th><th>연말정산 시기</th></tr><tr><td>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td><td>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td></tr><tr><td>근로소득</td><td>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td></tr><tr><td>공적연금소득</td><td>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하는 때</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연말정산 시기</th></tr><tr><td>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배달판매원의 사업소득</td><td>다음연도 2월분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 또는 거래계약을 해지하는 달의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때</td></tr><tr><td>근로소득</td><td>다음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td></tr><tr><td>공적연금소득</td><td>다음연도 1월분 공적연금 소득을 지급하는 때</td></tr><tr><td>종교인소득</td><td>다음연도 2월분 종교인소득을 지급하는 때</td></tr></table></td><td>2016.01.08</td></tr>
<tr><td>468p</td><td>(3)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②「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③「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td><td>(3) 이와 유사한 소득으로서 다음의 소득
①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일시금을 지급하는 자가 퇴직소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연하여 지급하면서 지연지급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자
②「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지급받는 과학기술발전장려금
③「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공제금
④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td><td>2016.01.08</td></tr>
<tr><td>481p</td><td>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td><td>③ 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td><td>2016.01.08</td></tr>
</table>

	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83p	⑤ 농어촌주택으로 2주택 : 농어촌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그러나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농어촌주택은 일반주택과 마찬가지로 양도 당시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	⑤ 농어촌주택으로 2주택 : 농어촌주택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농어촌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한다. 그러나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016.01.08
491p	3. 필요경비 (1) 의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및 양도직접비용의 합계액인 실지필요경비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자산에 비용지출로 인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및 다음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출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3. 필요경비 (1) 의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경우 필요경비는 해당 자산의 실지취득가액·자본적 지출액**(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한 경우에 한정한다)**·개발부담금·재건축부담금 및 양도직접비용의 합계액인 실지필요경비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자산에 비용지출로 인한 가치를 증가시키는 경우와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및 다음의 비용은 자본적 지출**(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 보관한 경우에 한정한다)**로 필요경비에 포함한다. 그러나 유지보수 차원에서 지출된 비용인 수익적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2016.01.08
492p	② 제외대상 ㉠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② 제외대상 ㉠ 토지·건물이 아닌 자산을 양도한 경우 ㉡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 미등기 양도자산의 경우 ~~㉣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2016.01.08
500p	(3) 물납 및 분할납부 ① 물납 : 양도소득세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3) ~~물납 및~~ 분할납부 ~~① 물납 : 양도소득세 물납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어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을 한도로 토지 등을 양도한 연도의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공용지보상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다.~~	2016.01.08
501p 보조단	-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외화차입금으로부터 발생하는 환차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2016.01.08
512p	2. 확정신고의무 면제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공적연금소득만이 있는 자 (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확정신고의무 면제자 다음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당해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2) 공적연금소득만이 있는 자 (3)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2016.01.08

	(5)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6)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7)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9) 위 (1) 내지 (7)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10) 소득세를 수시부과한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있는 자** (5) 퇴직소득만이 있는 거주자 (6) 근로소득과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7) 공적연금소득 및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8)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과 퇴직소득만 있는 자** (9)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 및 퇴직소득만이 있는 자 (10)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이 있는 자 (11) 위 (1) 내지 (9)에 해당하는 자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12) 소득세를 수시부과한 후 추가로 발생한 소득이 없는 자	
512p 보조단	확정신고의무 면제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 등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퇴직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확정신고의무 면제 1. 2인 이상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주된 근무지 등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종된 근무지 등의 소득까지 합산하여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거나 퇴직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2.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퇴직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나,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3.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은 제외한다), 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연말정산대상이 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에 대하여 원천징수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2016.01.08

세법 2권

위치	현재 내용	수정 사항	비고
611p	③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③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으로 정하는 경우 ㉠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전문,**	2016.01.08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과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616p	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13.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보건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공급하는 보건관리용역 및 지정측정기관이 공급하는 작업환경측정용역	2016.01.08
617p	(2) 교육용역(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 내용은 불문) ① 교육용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이러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2) 교육용역(허가·인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함 – 내용은 불문) ① 교육용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서 학생, 수강생, 훈련생, 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이러한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실습자재·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도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의 부수재화·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교, 학원, 강습소, 훈련원, 교습소 또는 그 밖의 비영리단체 ㉡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받은 사회적기업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과학관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과 미술관	2016.01.08
617p	①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① 예술창작품 : 미술, 음악, 사진, 연극 또는 무용에 속하는 창작품. 다만, 골동품(「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번호 제9706호의 것을 말한다)은 제외한다.	2016.01.08
618p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를 포함한다)	㉰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업무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에 관한 업무를 포함한다)	2016.01.08
623p	③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주차장 운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1.08
627p	13. 박람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사용	13.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016.01.08

해커스 공무원 Pass.com

	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 참가자가 수입하는 물품	
660p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한다. **다만,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016.01.08
660p	7. 수입세금계산서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7. 수입세금계산서 (1)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는 포함한다)**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	2016.01.08
660p 보조단	-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 유예** **① 세관장은 매출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유예를 미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를 수입할 때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다.** **② 납부를 유예받은 중소사업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등을 할 때 그 납부가 유예된 세액을 정산하거나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에게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③ 세관장은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된 중소사업자가 국세를 체납하는 등 그 납부의 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중소사업자에게 그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납부유예의 신청 절차, 납부유예 기간 및 그 밖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6.01.08
661p 보조단	-	**수입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이 경우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의 납부가 유예되는 때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납부유예 표시를 하여 발급한다.**	2016.01.08
668p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특례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1. 공급시기가 10월 25일인 세금계산서를 12월 31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③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공급시기 이후 세금계산서 발급 1. 공급시기가 10월 25일인 세금계산서를 12월 31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았으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하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2016.01.08

해커스 공무원 Pass.com

<table>
<tr>
<td></td>
<td>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2. 공급시기가 5월 25일인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경우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td>
<td>표 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한다.
2. 공급시기가 5월 25일인 세금계산서를 7월 10일에 발급한 경우
공급시기와 동일한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칙은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확정신고 기한 내에 발급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를 한다.</td>
<td></td>
</tr>
<tr>
<td>668p</td>
<td>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특례규정에 따라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td>
<td>⑤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받았고, 그 거래사실도 확인되는 경우</td>
<td>2016.01.08</td>
</tr>
<tr>
<td>674p</td>
<td>(3)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4조 제1항 단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th></tr>
<tr><td>법인 사업자</td><td colspan="2">[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30%] × 공제율</td></tr>
<tr><td rowspan="2">개인 사업자</td><td rowspan="2">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td><td>2억원 초과인 경우 : [과세표준 × 40%] × 공제율</td></tr>
<tr><td>2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 50%] × 공제율</td></tr>
</table>
</td>
<td>(3)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해당 사업자가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에 100분의 30(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0,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제84조 제1항 단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2">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th></tr>
<tr><td>법인 사업자</td><td colspan="2">[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 30%] × 공제율</td></tr>
<tr><td rowspan="2">개인 사업자</td><td rowspan="2">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td><td>2억원 초과인 경우 : [과세표준 × 40%] × 공제율</td></tr>
<tr><td>2억원 이하인 경우 : [과세표준 × 50%] × 공제율</td></tr>
</table>
다만,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가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법인사업자 : 과세표준에 100분의 3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
②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과세표준이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5, 과세표준이 2억원 초과인 경우에는 100분의 4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td>
<td>2016.01.08</td>
</tr>
<tr>
<td>676p</td>
<td>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영수증발급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은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td>
<td>1.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1) 일반과세자 중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영수증발급사업을 하는 사업자(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한다)와 간이과세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여신전</td>
<td>2016.01.08</td>
</tr>
</table>

해커스 공무원 Pass.com

<table>
<tr><td></td><td>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td><td>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현금영수증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직불카드영수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선불카드영수증 및 현금영수증발급장치에 의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 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td><td></td></tr>
<tr><td>707p</td><td><table><tr><th>구분</th><th>부과사유</th><th>가산세</th></tr><tr><td>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td><td>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td><td>그 공급가액 × 1%</td></tr></table></td><td><table><tr><th>구분</th><th>부과사유</th><th>가산세</th></tr><tr><td>발급시기가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하는 경우</td><td>세금계산서를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td><td>그 공급가액 × 1%</td></tr></table></td><td>2016.01.08</td></tr>
<tr><td>792p</td><td>5. 합병차익
합병차익이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을 말한다.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익금산입한다.
6. 분할차익
분할차익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을 말한다.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익금산입한다.</td><td>5. 합병차익
합병차익이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합병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을 말한다. 다만, 소멸된 회사로부터 승계한 재산가액이 그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그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이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에는 그 가액 중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익금산입한다.
6. 분할차익
분할차익이란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가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순자산가액이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교부한 주식의 가액과 교부금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초과금액을 말한다. 다만,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설립된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에 출자된 재산의 가액이 출자한 회사로부터 승계한 채무액, 출자한 회사의 주주에게 지급한 금액과 주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법인세법」에서 익금으로 규정한 금액은 제외한다.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한 경우 그</td><td>2016.01.08</td></tr>
</table>

해커스 공무원 Pass.com

		가액 중 분할법인 등의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가액을 익금산입한다.	
810p 보조단	-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부가가치세법」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취득·유지·관리를 위하여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하거나 지출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이라 한다) 중 업무용 사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업무용승용차 유지비용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6.01.08
928p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2)「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감사인(監査人)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의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60조 제7항).	2016.01.08
928p 보조단	-	세무조정계산서작성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정확한 조정 또는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내국법인의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조정반에 소속된 자가 작성하여야 한다. 1.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세무사 2.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 3.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	2016.01.08
929~930p	2. 물납 (1) 토지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2. 물납~~ ~~(1) 토지 등을 양도한 사업연도의 납부할 법인세(가산세를 제외한다)가 1천만원을 초과하여야 한다.~~ ~~(2)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 10일 전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그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고기한 전일까지 채권의 수납가액을 평가하여 그 물납에 대한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내국법인이 공공사업용으로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금전으로 납부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토지 등의 대금으로 교부받은 보상채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4)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입 또는 통화의 조절상~~	2016.01.08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933p 보조단	-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서 업종 등을 고려하여 법인은 그 요건에 해당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2016.01.08
956p	1. 승인취소사유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3)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5)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1. 승인취소사유 (1) 연결모법인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연결법인의 사업연도가 연결사업연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연결모법인이 완전지배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③ 연결모법인의 완전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연결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⑤ 연결법인에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⑥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의 완전 지배를 받는 경우**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각 연결법인은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이나 결손금을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연결집단이 취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모법인을 기준으로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익금에 산입** **②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손금에 산입**	2016.01.08
958p	5. 연결자법인의 배제 (1)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결납세제도의 재적용의 제한, 결손금의 처	5. 연결자법인의 배제 (1) 연결모법인의 완전 지배를 받지 아니하게 되거나 해산한 연결자법인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연결자법인이 다른 연결법인에 흡수합병되어 해산하는 경우에는 해산등기일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은 연결사업연도와 그 다음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	2016.01.08

	리 및 중간예납세액의 처리는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승인취소규정을 준용한다. (3) 연결자법인이 변경된 경우 1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나는 연결사업연도 중에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라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각각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연결사업연도 동안 제76조의14제1항에 따라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하게 된 개별법인을 말한다.)의 소득금액 : 연결배제법인의 익금에 산입 ② 연결사업연도 동안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 : 연결배제법인의 손금에 산입 ③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해당 법인의 소득금액 : 해당 법인의 익금에 산입 ④ 연결사업연도 동안 연결배제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해당 법인의 결손금 : 해당 법인의 손금에 산입	
959p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종료일 이전 2주가 되는 날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1. 연결과세표준 등의 신고 (1) 연결모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해당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아야 하는 연결모법인 또는 연결자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가 종결되지 아니하여 결산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신고기한 종료일 3일 전까지 신고기한의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을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016.01.08
1005p	**1. 물 납** **(1) 물납신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2) 물납재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1. 물 납**~~ ~~**(1) 물납신청**~~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물납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물납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세액에 대하여 물납허가신청서를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재경정 또는 추징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물납허가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2) 물납재산**~~ ~~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은 국내 소재 부동산으로 한다.(「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3조).~~	2016.01.08